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제도의 발전방안

최현섭*

I. 머리말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의 금융시장에서는 선물·옵션·스왑 등 이른바 金融革新(financial innovation)의 부산물인 派生金融商品 혹은 新金融商品이라는 금융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회계제도의 정비가 강하게 요구되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國際會計基準委員會(IASC)와 미국 財務會計基準審議會(FASB) 등 각국의 적극적인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파생금융상품 전반적으로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등의 제도가 미흡하거나 미비되고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국내적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대부분은 簿外去來(off-balance-sheet transactions)이기 때문에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자에 있어서도 그 손익상황과 리스크상황이 불명확하게 되기 쉬운 이러한 상황등이 국제무대로 펼쳐지게 되면 국가적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규정과 발전과정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회계처리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립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조화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定義는 1994년 10월에 공표된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의 보고서인 SFAS No.119의 내용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을 선물, 옵션, 스왑으로 한정하여 그 정의, 종류, 기능,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의 會計處理規程은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규정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례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上述한 SFAS No.

* 중앙대학교 대학원

119의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공시를 반영함으로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1994년 1월에 공표된 금융상품에 관한 國際會計基準 공개초안 48이 1991년 9월에 공표된 공개초안 40과 어떻게 상이한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함으로써,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연구무대를 보다 국제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넷째,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주요 問題點으로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의 인식기준(실현기준과 실현가능성기준), 측정기준(원가법과 시가법), 재무보고기준(법적 형식과 경제적 형식)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의 국제 비교를 위한 분석적인 자료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섯째,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事例分析으로서 선물, 옵션, 스왑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의 규정에 의거하여 되도록이면 세 나라를 동시에 비교하고자 노력했으나, 해당 국가의 규정이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가능한 한 기업회계기준 예규의 수치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직접적인 비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연구는 회계학적 연구 이외에도 경제학적 연구, 재무관리적 연구, 세무적 연구 등 여러가지로 수행될 수 있다. 본 논문은 會計學的 研究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연구들은 이미 많이 수행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다른 연구들이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내용, 헷징효과, 도입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는데 대하여, 본고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 문제점이 무엇이고 발전방안이 무엇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II. 파생금융상품의 개념적 고찰

1. 파생금융상품의 정의

派生金融商品(Derivative Instruments)은 二次金融商品 또는 新金融商品이라고도

하는데, 1994년 10월에 공표된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 보고서인 SFAS No.119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을 “선물계약, 선도(예약)계약, 스왑, 옵션계약 기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선물금융수단에 따라 분류한 파생금융상품인 선물거래, 옵션, 스왑의 정의를 요약하였다.

2.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파생금융상품은 ① 상품시장에서 先物商品·商品先物·商品先物 옵션으로, ② 금융시장에서 선도금리계약(FRA: Forward Rate Agreement 또는 Futures Rate Agreement)·이자율선물(Interest Rate Futures)·이자율옵션(Interest Rate Option)·이자율선물옵션(Interest Rate Futures Options)·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으로, ③ 외환시장에서 선물환(Forward Exchange)·통화선물(Currency Futures)·OTCT통화옵션·통화옵션(Currency Option)·통화선물옵션(Currency Futures Option)·통화스왑(Currency Swap)으로, ④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선물(Stock Index Futures)·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주식옵션·주가지수선물옵션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편, 재무블록에 의한 파생금융상품구성(financial building blocks) 방식에 의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성과를 보여주는 수익패턴(payload profile)에 따라, 선물과 옵션을 결합한 先物옵션, 그리고 옵션과 스왑을 결합한 스왑션(Swaption = swap + option),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을 결합한 利子率·通貨스왑(Cross Currency Interest Swap) 등으로 분류된다.

3. 파생금융상품의 기능

(1) 선물거래의 기능

첫째는, 선물거래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격위험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헷지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이전하는 헷지기능이다. 둘째는, 자유경제가 곧 시장경제인 완전시장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價格發見의 기능이다. 셋째는, “하락하면 사고, 상승하면 판다”는 가격차이 전략을 통해 그 등락을 완화시키는 投機기능이다. 넷째는,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 or over-sold position)”을 확립함으로써 그 受渡기일에 환금할 수 있는 換金기능과 “매입포지션(long position or over-bought position)”을 확립함으로써 그 受渡기일에 실물을 취득할 수 있는 實物取得기능이다.

(2) 옵션거래의 기능

옵션거래의 기능도 선물거래와 마찬가지로 헷지(hedge)거래, 裁定(arbitrage)거래, 投機(speculations)거래의 3가지가 있다.

(3) 스왑거래의 기능

첫째는, 借入費用의 節減 및 危險의 헷징이다. 둘째는, 기존부채와 신규부채의 借入條件 개선이다. 셋째는 장래의 資金收支管理 및 중장기외화자산의 헷징이다. 넷째는 조직전체 입장에서의 효율적인 流動性(liquidity)관리이다.

4. 파생금융상품의 장단점

먼저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 부외거래의 長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외거래는 첨단 금융기법을 구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극히 자유로운 고도수단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커다란 이점을 갖추고 있다. 부외거래의 활용에 따라 다양한 현금흐름을 용이하게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조합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전통적 거래와 완전히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부외거래에 관련된 신용위험은 원금이 극히 일부로 한정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비해서 기동성, 자본효율성 등의 면에서도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거래원가의 절감과 기동성의 향상이라는 이점은 각 금융시장간의 재정기능의 향상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 향상에도 이바지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현물시장과의 관계에서는 효율적인 헷지수단의 제공을 통해서 양 시장 전체의 효율성, 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에는 이와 같은 이점이 있는 반면, 거래에 따라 여러 가지 問題點도 지적되고 있다. 금융거래에는 신용위험(credit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법적위험(legal risk), 시장조작위험(market manipulation risk) 등 다종다양한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면에서 파생금융상품도 전통적 금융상품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지만, 파생금융상품은 그 구조가 극히 복잡해서 위험의 파악이 어렵게 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감시체제를 비롯하여 그것을 가로 막는 제도적 기반이 시장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시장간의 연결이 현재 이상으로 강해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일부의 파탄이 다른 시장에도 전파되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

성을 해치는 위험 즉 시스템위험이 높아질지도 모른다.

III. 한국·미국·일본의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규정

1. 한국의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규정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기업들의 자의적 회계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換率 및 利率의 변동위험을 회피코자 하는 先物性 外換·金利去來에 의한 金融技法의 활용이 확대됨과 아울러 이에 대한 규정 제정 및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서 1990년 3월 企業會計基準을 전면 개정하면서 先物換去來 등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992년 7월에는 先物換去來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例規 84-470을 대폭 수정한 102-470에서는 선물환계약·선도금리계약·스왑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완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法人稅法 기본통칙에서 1988년 3월 '先物去來로 인한 換差損益의 처리'를 신설하였으며 한국은행 銀行監督院은 1988년 11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金融先物去來관련 會計處理基準' 감경 9141-383호를 제정하여 계속 적용해 오고 있는데 이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규정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先物이 발달한 관계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공식적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SFAS No.80, AICPA Issue Paper No.86-2이므로 여기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그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회계기준이 아니지만 이자율스왑으로서 FASB 토의록인 FASB 지침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더욱이 통화스왑으로서 SFAS No.52, 공시로서 SFAS No.119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일본의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규정

일본에서는 派生金融商品이 전통적 금융상품을 포괄한다고 할 정도로 그 종류도 많고 회계처리규정도 다양하다. 여기서는 外貨換算去來等 會計處理基準, 先物· 옵션에 관한 意見書, 研究報告書 3·4호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금융상품에 관한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48

1.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48과 공개초안 40의 差異点

1991년 9월에 공표된 금융상품의 공개초안 40을 재검토한 결과로서 공개초안 48이 1994년 1월에 공표되었다. 공개초안 40은 기본적인 입장으로서 개념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각국에 위임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개별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이 공개초안 48에서는 부록의 사례 연구를 늘리고, 분개의 예를 늘린 결과 대단히 알기 쉽게 되었다. 이 재검토는 공개초안 40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재검토는 공개초안 40의 변경에 관한 비평, 중요한 변경도 없이 공개초안 40에서 미룬 제안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중지에 관한 수정기준안의 실무적인 실시면에 관한 비평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변경된 공개초안 48의 내용을 그 範圍, 定義,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認識 및 認識의 中止 (Initial Recognition and Discontinuing Recognition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複合金融商品(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相計(Offsetting), 최초인식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測定, 原價基準으로 계상되는 금융자산의 缺損(Impairment of Financial Assets), 헷지會計(Hedge Accounting)에 적합한가 여부에 대한 危險의 판정(예상거래를 포함), 기타의 헷지會計, 認定된 代替測定基準(Measurement Under Allowed Alternative Treatment) 논점, 公示基準(Disclosure)으로 나누어 요약하였다.

2.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48의 問題点

첫째는 公正價値 算定方法의 문제점이다. 공개초안 48은 공정가치에 의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도입한 참신한 회계기준이다. 공개초안 48의 표준처리에서는 “기타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분류된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이 표준처리하에서는 장기나 만기까지 보유하는 의도가 있는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은 공정가치가 아니므로 별도로 공정가치의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인정된 대체처리는 “기타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공정가치회계가 적용된다. 더욱이 공정가치의 산정방법은 큰 골격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상세한 각국의 회계실무에 위임되어 있다. 잘 정비된 유통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비교적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고 신뢰성도 높다. 한편 유통시장의 미정비라든가 전혀 유통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견적방법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된다. 이 견적법에 관해서 공개초안 48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다.

둘째는 公正價値會計 實施上의 문제점이다. 공정가치회계는 원가주의회계에 대립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 채택에 있어서는 폭넓은 의견일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주지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로 실시하면 오히려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오해나 혼란을 줄지도 모른다.

셋째는 現在價値割引會計의 문제점이다. 현재가치할인회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의 전산시스템 변경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넷째는 금융상품의 範圍에 대한 문제점이다.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자본, 헷지가 대상이 되고 있으며, 너무나도 범위가 넓다. 부채와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도 그다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지도 모른다.

다섯째는 經營者의 意思에 따른 금융상품의 分類에 대한 문제점이다. 공개초안 48은 경영자의 의사를 과도하게 존중하고 있으며, 그 의사에 따라 재무제표가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결과가 된다. 금융상품을 3분하는 판단은 경영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지만, 이 구분법에 의하면 손익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제안조건이 다른 재무제표에서의 비교가능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

여섯째는 複合金融商品의 會計基準에 대한 문제점이다. 법적 측면과 실태를 경시하고, 논리적인 측면으로 치우친 회계가 되고 있다. 전환사채에 관해서는 일

체 불가분의 성격을 가지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부채와 자본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몇개의 가정에 기초한 이론계산을 해야 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일곱째는 不良債券의 評價減에 대한 문제점이다. 평가감해야 할 판단기준이 예시되고 있지만, 2년간 장부가액을 하회한 경우와 2년 연속 손실이란 기계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의 과거 실적등에 기초한 합리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상 대응이 용이한 충당금방식 및 보다 엄격한 평가방법이 라고 생각되는 低價法(lower of cost or market)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V.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를 둘러싼 주요 문제점

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의 認識基準

한국과 일본에서는 수익의 인식이 일반적으로 실현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물거래손익의 인식기준으로서 헷지거래와 투기거래에 모두 원가기준(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실현개념에 의한 원가기준에 의하면 결제일시점까지 선물거래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선물시세의 변동에서 포함된 손익이 차금결제시까지 이연되어 버린 결과 기업의 이익조작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심의회 보고서인 SFAS No.80에서 파생금융상품의 회계기준에 관해서, 선물거래의 변동손익을 인식하는 기준으로서 實現可能性基準을 채택함으로써 선물거래의 時勢變動에 관한 손익을 당해 변동기간의 발생손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함된 손익의 기업에 의한 자의적 조작 여지를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시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실현기준에서 실현가능성기준으로 확장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파생금융상품의 測定基準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금융상품은 원가법이나 저가법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금융상품의 인식·측정에 관해서는 원가·실현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

신하여 시가법의 채택이 고려된다. 관련된 시가법의 채택은 선물손익의 인식에 관해서 경영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회계처리의 자의적인 조작을 배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가법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첫째로 시가변동에 의한 평가손익은 어디까지나 미실현손익이며 게다가 기업에 의해서도 현재 미확정된 손익이므로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設로서, 이는 현행회계제도와와의 조화를 중시한 의견이며, 둘째로 일단 평가익을 계상하면서 처분가능이익의 산정단계에서 미실현이익으로서 다루는 사고방식은 실질적으로 각주에 의한 포함이익의 공시가 조금도 변화지 않는다는 設인데, 이는 평가익을 처분가능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다. 요컨대 여기서 논쟁이 되는 점은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을 실현가능한 손익으로서 계상해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점으로 귀착한다. 더욱이 후자는 회계의 情報提供기능보다도 오히려 회계의 所得配分기능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회계실무로서 原價基準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한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있고, 時價基準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있다. 어쨌든 서서히 시가정보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이유의 하나는 재무제표작성목적에 대한 사고방식이 손익증시에서 리스크증시로 변천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리스크 관리 증시의 입장에서 자산의 본질에 대한 규정이 미국의 財務會計基準審議會(FASB)와 영국의 會計基準委員會(ASC)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3. 파생금융상품의 財務報告基準

금융상품의 등장은 하나의 사실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재무제표상에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가 라는 새로운 회계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문제는 “事實(對象)과 表現(行爲)” 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파생금융상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法的 形式에 비추어서 사실을 표시하는가, 經濟的 實質에 비추어서 사실을 표시하는가 라는 상반되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이론적으로 보면 파생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종전의 금융자산에 관해서도 경제적 실질을 중시해서 표시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늘날 제도회계상에서 떠맡고 있는 과제는 금융상품회계를 출발점으로 해서 외화한산회계, 리스회계, 부문회계 등, 종전의 회계이론과 회계기준의 틀내에서는 원칙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회계원칙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입각하면서 그 법률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을 비교하면서 이 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형식보다도 實質優先(Substance over Form)이라는 사고방식이 회계의 기초로 자리잡고 財務報告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왔다. 또한 영국에서도 금융상품 거래에 관해 法的 측면보다도 經濟的 實體(economic entity)를 중시해서 회계처리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다만 영국에서는 簿外金融(off-balance-sheet financing)의 공시문제 설명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해 영국척허회계사협회와 법률협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서 그것이 당분간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실질 우선”의 사고가 모든 일치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法的 規制에 회계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관계에 있다.

경제적 실질 우선 사고에 의거하는 방법이 회계처리상 보다 실질적이라고 생각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재무리스크의 경우에는 통상 소유권의 유무에 의한 이른바 법적 형식에 의거해서 회계처리하기 보다도, 借主측에 경제적 효용을 가져오는 점에 착안해서 회계처리 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또한 連結財務諸表에 관해서도 법적 실체로서 대외거래가 수행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會計實體로서 보다 상위의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를 보고주체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융상품거래에 관해서도 그 회계기준의 형성과 적용시 문제가 되는 “경제적 실질 우선 사고”를 고려해갈 필요가 있다.

VI. 한국·미국·일본의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사례분석

1. 선물거래 회계처리의 사례분석

한국, 미국, 일본의 投機目的을 위한 先物去來에 대한 회계처리의 사례분석으로서

는 한국산업은행의 예를 들어 선물거래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예시하였다. 선물거래의 가격변동분에 대한 증거금의 증감만을 先物去來評價調整金 계정을 사용하여 기장하고 있으며 결제시 선물손익을 인식하고 있다. 선물거래평가조정금 계정은 예치금의 평가성 항목으로서 매년 결산기에 이월처리하고, 선물거래와 관련된 현금수수 사항만을 동 계정에서 처리하고 있다. 선물거래평가조정금 계정은 예치금계정이 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항목이다.

우리나라의 선물과 관련된 선물회계실무에서는 헷지목적의 선물거래인 경우에도 선물손익을 계약실행일 또는 정산일에 인식하게 되면 계약실행일 또는 정산일까지 사실상 선물손익의 인식을 이연시킴으로써 왜곡된 손익계산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선물거래인 경우에는 일일정산(marking to market) 제도가 있으며 매 결산기마다 선물대상물(현물)의 가격을 현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가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과세하는 것이 선물의 본질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겠다.

2. 옵션거래 회계처리의 사례분석

한국과 미국의 通貨옵션去來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분석으로서는 현물거래와 옵션거래에 대해 옵션행사 여부에 따른 손익을 비교하였다. 즉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營業去來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옵션去來가 상계시키므로 옵션거래에 의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옵션수수료 및 프리미엄·디스카운트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물환거래와 동일하다. 한편,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거래는 소멸되어 營業去來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및 외환차손익, 옵션수수료만이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 옵션거래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의 회피영향이 우리나라 회계처리규정에 의할 경우 회계에 반영되지 않는 점은 先物換去來의 경우와 동일하다. 한편, 일본의 옵션거래 사례분석은 先物·옵션 등의 意見書와 研究報告書 제4호에 예시된 자료가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3. 스왑거래 회계처리의 사례분석

한국과 미국의 通貨스왑去來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분석으로서는, 먼저 유입·유출되는 현금흐름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한국, 미국의 회계처리규정에 의해 통화스

왓거래의 회계처리를 분석하였다. 통화스왑을 분석한 결과 ₩614,000의 순이익을 실현하였다. 한국의 경우 외환차익에서 ₩346,000, 외화환산이익에서 ₩268,000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미국의 경우 스왑손익에서 ₩1,094,000의 이익이, 외환차손에서 ₩180,000 그리고 외화평가손실에서 ₩300,000의 손실이 발생하여 양국 모두 전체이익은 동일하였다.

한편, 한국·미국·일본의 利率스왑去來 會計處理에 대한 사례분석으로서는 한국·미국·일본의 회계처리규정에 의해 이자율스왑거래 회계처리를 분석하였다. 회계처리를 綜合分介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왑거래에서 선물거래손실이 73,500,000원, 선물거래이익이 53,361,000원 발생하여 20,139,000원의 純現金減少가 생겨 그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스왑거래를 위하여 \$10,000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변동금리가 계속 상승함으로써 \$68,000의 純現金增加가 생겨 그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스왑거래에서 지급이자스왑료가 73,500,000원, 수입이자스왑료가 53,361,000원 발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20,139,000원의 純現金減少가 생겨 그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VII. 맺음말: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先物換去來등의 회계처리가 수정되고 外國換管理規程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의 자유화·자본시장의 국제화 등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도 국내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國際決濟銀行(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을 중심으로 하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제의 정비를 위한 활동이 시작되고, 위험관리기법으로서의 資產負債綜合管理(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개념을 경영에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등이 일례이다. 따라서 재무활동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수행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요소를 회피·분산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 구조 및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회계처리규정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本章에서는 앞서의 연구를 토대로,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인 先物, 옵션, 스왑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예규, 금융선물거래관련 회계처리기준, 법인세법 상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가 갖고 있는 問題點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과 예규상의 문제점

첫째, 선물관련 기업회계기준 예규에는 投機目的(수익창출목적)과 헷지目的(위험회피목적)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투기목적과 헷지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선물계약이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와 개별적으로 대응되지 않고 금액이나 만기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일 자산·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대응이 되지 않는 부분과 대응이 되는 부분과의 회계처리가 서로 다르게 된다.

둘째, 헷지目的거래의 기업회계기준 예규 102-470의 事例 2와 3에서 설명된 제3국의 통화를 이용하여 先物去來를 한 경우는, 원화와 일본 엔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는 이상, 회사가 제3국 통화 자산·부채 혹은 제3국 통화의 손익의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회피를 위한 헷지目的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선물환계약, 선도금리계약, 스왑계약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외국환관리규정에서는 선물환계약과 선도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용어상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그 외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넷째, 예규에서는 위험회피대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과 선물계약의 가격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선물계약 등이 위험회피대상 자산과 부채와 개별적으로 대응되지 않거나 또는 금액이나 만기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동일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대응되지 않는 부분과 대응되는 부분과의 회계처리가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선물거래소가 개설될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회피대상 자산과 부채와는 완전히 일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섯째, 예규에서는 미래에 나타날 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해서는 계약실행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손익을 인식 즉, 계약실행일에만 정산차액에 대해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에 가감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체결일과 결산일에는 단순히

계약내용을 비망으로 기록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계정과목의 경우 선물거래와 선물환거래에 대한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선물환할증차금이나 선물환할인차금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선물거래차나 선물거래대를 사용함으로써 선물거래의 분류에 따른 명칭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일곱째, 外貨포지션의 헷지를 위한 先物換去來 회계처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는 선물환거래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지 않으므로 先物換契約을 체결한 기업은 簿外金融을 갖게 되고 이는 부채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나타낼 뿐 아니라 부외자산이 있기 때문에 총자산회전율과 총자산이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덟째, 外貨去來約定의 헷지를 위한 先物換去來 회계처리에 있어서 우리나라 GAAP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선물환 결제일의 현물환율로 결정하고 계약당시의 선물환율(약정환율)과의 차이는 先物去來損益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헷지목적의 선물환거래에서는 外換去來損益이 발생할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GAAP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금융선물거래관련 회계처리기준상의 문제점

첫째, 외국환은행의 경우 투기목적의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투기거래와 헷지거래의 구분 기준이 없다. 또한 헷지목적의 선물거래인 경우에도 선물손익을 결제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게 됨에 따라 투기목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다.

둘째, 선물거래의 손익인식을 계약실행일 또는 청산일까지 이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헷지거래의 경우 현존하는 외화 자산·부채의 외화평가손익과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이 상계되어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투기거래의 경우 그 영향이 커 회계정보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외국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위험노출을 거래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전체의 측면에서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선물거래 계약가액을 외화선물거래와 금리선물거래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 난외의 각주사항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헷지에 관한 정보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3. 법인세법상의 문제점

첫째,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선물거래의 환차손익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물환계약 등만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선물거래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세무상의 규정을 기업회계기준 예규와 비교해 볼 때 **稅務調整事項**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업회계기준 예규에서는 **先物去來借計定**이나 **先物去來貸計定**을 상각 또는 환입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손익을 **期間配分**함에 비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一時損益**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정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선물거래소가 개장되어 표준화된 선물이 대량으로 거래될 경우 필요하게 될 회계처리기준에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예규, 금융선물거래관련 회계처리기준, 법인세법상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그 발전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과 예규의 보완 및 개선

첫째, 선물거래의 목적이 투기목적인지 헷지목적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구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投機目的의 先物去來**와 **헷지目的의 先物去來**가 서로 **目的과 實質**을 달리하는 만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와 선물계약대상 자산·부채의 금액 및 만기일 혹은 처분일이 완전히 일치 대응되도록 포괄적인 독립적 회계처리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헷지목적의 선물거래시 선물거래 자체의 회계처리와 위험회피대상 자산 사이의 **經濟的 相關關係**를 나타내줄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위험회피대상 자산과 부채의 금액과 만기일이 불일치할 때에는 선물상품자체의 가격변동에 의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익창출목적의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日日精算** 혹은 **市場一致法**(mark to market approach)을 사용하여 당기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실현이익을 계상시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를 선물거

래종결시까지 이연시킨다면 만기가 도래하는 회계년도의 손익으로 일시에 계상되므로 기간손익이 왜곡될 것이다.

넷째, 실현 및 미실현손익의 인식기준 등 선물에 관한 회계처리방침,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실현손익총액,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총매도·매입 선물의 계약금액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오늘날의 국제외환거래에서 현물환거래에 관련된 자산·부채는 기록하고 선물환거래에 관련된 자산·부채는 비망기록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힘들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선물환거래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상에 인식하게 되면 簿外金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미래의 외화거래약정을 헷지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자산의 취득원가를 約定換率로 하면 선물거래손익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헷지목적의 선물거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현재의 규정은 先物換去來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밖에도 先物去來 및 옵션·스왑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옵션·스왑도 다종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형태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규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선물거래의 의의와 분류 그에 따른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용어 및 계정과목을 적절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선물거래의 주석공시를 기업회계기준의 주석공시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실현 및 미실현손익의 인식기준 등 선물에 관한 회계처리방침,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총매도 및 매입선물의 계약금액,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실현손익의 총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선물거래관련 회계처리기준의 보완 및 개선

첫째,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일일정산제도가 있으며 매 결산기마다 선물대상물(현물)의 가격을 현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時價基準에 따라 회계처리 및 과세하는 것이 선물의 본질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융선물거래관련 회계처리기준은 그 내용상 기업회계기준과 특별히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고, 단지 기업회계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 금융선물거래관련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법인세법상의 보완 및 개선

첫째, 현실적으로는 선물거래의 손익을 **權利義務確定主義**에 따라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선물거래가 청산된 시점이 속하는 기간의 과세소득으로 인식토록 법인세법 기본통칙(2-11-14...17)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해야 할 점은 결제일에 손익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계약일과 결산일에도 시가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관련 법령 및 통칙 등의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先物去來**에 대한 차이점 및 불필요한 차이의 제거 또는 세법상 익금·손금 산입의 조정 등으로 **企業會計**와 **稅務會計**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선물거래에 있어서 투기목적의 선물손익과 헷지목적의 선물손익의 성격에 따른 과세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투기목적의 선물손익은 **資本利得稅**의 문제가 있고 헷지목적의 선물손익은 **經常損益**의 성격이 있으므로 각각 선물손익의 성격에 따라 세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